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남창우 · 구정모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I. 서론

최근 재정여건의 변화와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전개에 따라 국가와 지방간의 재정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논의의 전개방향은 첫째, 지방재정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는 가운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해 국가재원의 지방이양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지방정부가 재정운영의 자주성·독립성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고 이는 구체적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과세자주권·기채자주권 강화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약 15년, 그리고 민선 단체장 체제가 들어선 지 제 3기인 지금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약 8 대 2 수준에 머물고 있고, 이와 같은 국세중심구조는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거의 변화되지 않았다. 지방재정의 세입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방자치 실시 초기에는 크게 증가하였다가 1994년을 정점(세입 대비 56.1%)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2000년

* 이 논문은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18집 제3호에 게재된 논문을 거의 전재한 것이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KRF-2003-002-B00314)에 의하여 연구되었던 것임을 밝힌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방소비세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 및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소개하는 것으로 저자들의 추가적 연구업적과는 무관한 것이다.

대 현재는 40% 대에 머무르고 있다. 전체 보조금에서 일반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초기의 60% 수준에서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앙·지방간의 자원배분 규모와 체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아울러 지방분권을 추구하는 참여정부의 각종 행·재정정책들이 상호 상승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도 기존의 자원배분 체계에 일대 변화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에서 지방재정력의 향상은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안정적인 자원확보를 기본으로 한다. 왜냐하면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후생증진을 도모할 일차적인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지방재정의 기본과제는 증가하는 지방재정수요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합리적인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의 시정이 시급한 과제이며, 국세의 지방세 이양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현행 세원배분이 지나치게 국세 위주로 되어 있어 배분의 구조적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 둘째, 국세가 소득세·법인세 등 소득과세와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등 소비과세 중심으로 되어 있어 세수탄력성과 세수안정성이 높은 반면 지방세는 취득세·등록세·종합토지세 등 재산과세 위주로 되어 있어 부동산 경기민감하게 반응하고 세수탄력성이 낮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 증가하는 지방재정수요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자치기반을 구축하며 취약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기초재원인 지방세의 비중강화가 불가피하다.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에 있어서는 세원의 이동성, 세수의 신장성 및 안정성, 세원의 분포와 같은 기준에 따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세의 지방세화를 위한 세목으로는 소득과세·소비과세·재산과세 등이 검토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최근에는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의 지방세로의 이양 및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소비세의 도입이 국가와 지방재정간의 수직적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에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지방재정간 수평적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염려를 여러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히 불식시키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같다. 사실 지방재정간의 세원의 분포 및 재정력 등을 완벽하게 고려하여 지방재정을 개선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한 이론적 기초 및 연구동향은 어떤지, 수직적 불균형 해소에는 얼마나 기여를 하고, 지방재정간 수평적 불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지방소비세 도입의 바람직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세원조정론과 선행연구

1. 재정여건의 변화와 세원조정론

지방분권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리라 예상되는 21세기에는 지방정부가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립형 체질’을 구축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이 확대되어야 하고, 이에 상응한 재원이양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오연천, 1998). 또한 경제성장이 진행될수록 국가공공재보다는 지역공공재에 대한 수요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는 점에 비추어 지방으로의 추가적인 재원이양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노력은 지방세보다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이전재원의 확충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 결과 지방재정의 수직적 불균형이 점차 확대되어 올 수 밖에 없었다. <표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형식적 세원배분과 실질적 세원배분의 격차가 1990년 18.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현재 21.9%를 기록하고 있다(곽채기, 2005: 13).

<표1> 중앙·지방정부간 재원배분 수준과 구조의 변화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1970	1980	1990	1995	2000	2004	2005
형식적 세원배분	국 세 (A)	7,649	58,077	268,474	504,314	929,347	1,220,686	1,305,907
	지방세 (B)	332	7,678	63,673	153,159	206,006	333,655	336,952
	B/(A+B)	8.3	11.7	19.1	23.3	18.1	21.4	20.5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503	4,100	27,645	56,713	84,493	144,806	194,845
	국고보조금	213	3,269	34,191	56,574	131,960	126,697	164,655
	지방양여금	-	-	-	18,701	37,134	43,972	-
	합 계 (C)	716	7,369	61,836	131,988	253,587	315,475	359,500
	C/A	9.4	12.7	23.0	26.2	27.3	25.8	27.5
실질적 세원배분	중앙정부 사용 재원(A-C=D)	2,933	50,708	206,638	372,326	675,760	905,211	946,407
	지방정부 사용 재원(B+C=E)	1,048	15,047	125,509	285,147	459,593	649,130	696,452
	E/(D+E)	26.3	22.9	37.8	43.4	40.5	41.7	42.4
실질적·형식적 세원 배분비율의 격차		16.9	11.2	18.7	20.1	22.4	20.3	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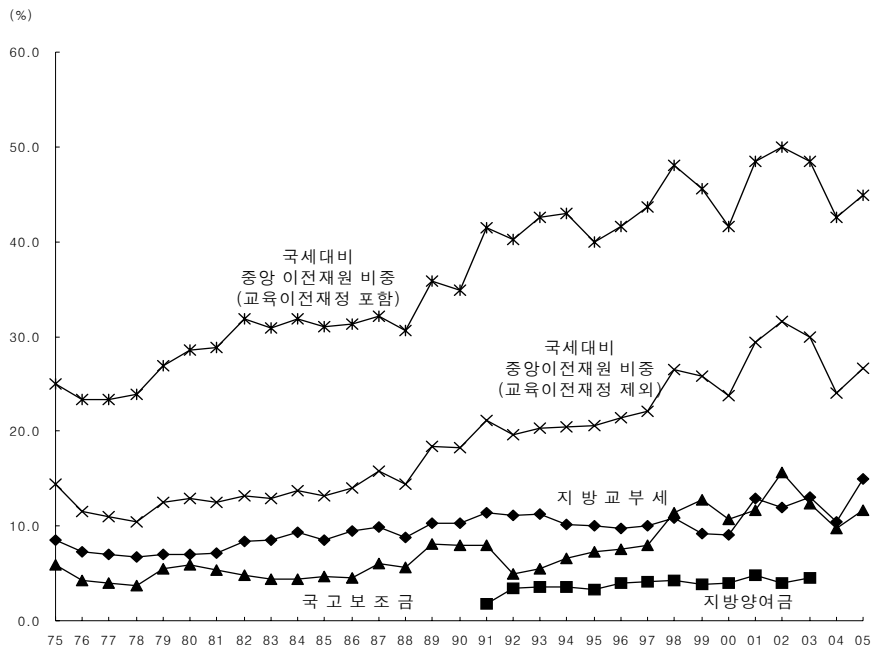
주 : 1) 2000년까지는 결산기준이며, 2004년은 최종예산, 그리고 2005년은 당초예산기준임

2) 국세 수입에는 지방양여금 대상 세목의 수입도 포함되어 있음

3) 지방교육분야 이전재원은 제외한 것임

자료 : 곽채기(2005: 12)에서 인용.

이러한 지방재정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의 확대는 이전재원의 지속적 확대에 기인한 것이다. [그림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중앙정부의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재원규모가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재정의 수직적 불균형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자치단체의 전체세입중에서 이전재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지방자치제 실시이후에도 계속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수직적 재정불균형은 지역주민들에게 비용부담의 비가시성으로 인해 재정환상을 유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중앙정부에 재원확충을 의존하는 행태를 조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자료 : 기획예산처(2005)

[그림 1] 지방이전 재원의 대 국세 비중 추이

한편, 중앙 및 지방정부간 세원조정은 법정외세의 도입과 신세원의 개발 등의 방안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표 2〉 참조). 이러한 수직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하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첫째, 자주적인 지방세원의 확보, 둘째, 지방재정간 수평적 불균형의 완화라는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법정외세는 이 원칙에 충실한 데 반하여 신세원의 개발은 수평적 불균형 해소에는 큰 기여를 하기 어렵다.

〈표 2〉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세원조정형태

구 분	법정외세	신세원	국세의 지방세화	공동세제도
성 격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따라 설치	수익자·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도입	국세의 세목을 지방세로 이양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일정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이용
수직적 불균형	새로운 세원의 확보에 따라 세원조정 가능	지방세수 신장에 따라 세원 조정 가능	세원조정 가능	세원조정가능
수평적 불균형	지역간 세원조정 가능	서로 다른 지역적 특성으로 큰 기여 어려움	지역간 세원 불균등으로 더 악화 가능	지역간의 세원조정 가능
도입 가능 시기	지방자치 정착에 따른 재정자율성이 확립되는 시점	조세저항이 없으면 단기적으로 도입 가능	도입은 가능하나 중앙정부와의 갈등 가능	중앙과 지방재정의 장기적 균형관계의 관점에서 추진 가능

주 : 이영희(1993)에서 재구성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을 통한 장기적인 개편방안으로서는 국세의 지방세화,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등의 도입 그리고 세원의 공동이용을 지향하는 공동세제도의 도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와 같은 국세의 지방세화는 장단기에 구애없이 도입 가능하나 지역간 세원의 편차가 심해 수평적 불균형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데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세원배분방법과 관련하여 Bird(1999)는 수직적 세원배분에 관한 세가지의 큰 원칙과 일곱가지의 작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전자는 지방고유재원의 충분성, 지역성의 원칙, 효율성과 세무행정상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원칙에 의거하여 이상적인 지방세가 갖추어야 할 작은 원칙으로 지방세 수입의 탄력성과 안정성, 낮은 조세 수출, 높은 가시성(visibility), 공평성, 낮은 이동성, 간소한 세무행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곽채기, 2004: 36). 새로운 세원배분론에 의하면 주요세원의 정부단계별 배분의 적합성에 대해서도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持田信樹(2004)는 전통적 세원배분론과 정책론적 세원배분론에 의거한 주요세원의 정부간 배분의 적합성과 그 이유를 〈표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3〉 정부간 세원배분론에 따른 주요세원의 정부간 배분의 적합성 비교

대상세원	전통적 세원배분론				정책론적 세원배분론			
	과세 표준	세율 결정	세무 행정	이유·문제점	과세 표준	세율 결정	세무 행정	이유·문제점
고정자산세	광역	기초	기초	이동성이 낮음, 응익과세	광역	기초	기초	이동성이 낮음, 응익과세
개인소득세	중앙	중앙	중앙	재분배 기능과 안정화 기능 관련 세원, 이동성	중앙	광역 기초	광역 기초	일반응익원칙, 중복과세
법인세	중앙	중앙	중앙	높은 이동성, 안정화 기능 관련 세원	광역 기초	광역 기초	광역 기초	일반응익원칙, 부가가치 베이스
소매대상세	광역	광역	광역	납세협력 비용	광역	광역	광역	납세협력 비용
부가가치세	중앙	중앙	중앙	경계통제, 경계간 세금조정 곤란	중앙	광역	광역	경계통제나 경계간 세금조정 가능

주 : 중앙은 중앙정부, 광역은 광역자치단체, 기초는 기초자치단체를 의미함
 자료 : 持田信樹(2004), 곽채기(2004: 35)에서 재인용.

2. 선행연구

그동안 세입자치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혁의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중의 하나가 지방소비세의 도입이다. 지방소비세제의 도입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세제에서 소비과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세원간의 균형을 도모하면서 지방세를 확충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지방소비세 연구를 종합하여 정리해 보면 〈표4〉와 같다. 이 세제의 도입은 크게 세가지 방안으로 집약할 수 있다(곽채기, 2004:39). 첫째는 담배소비세, 레저세, 주행세 등의 기존 소비과세의 세율 또는 과표를 상향 조정하는 방법, 둘째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여 신세목을 도입하는 방법, 그리고 셋째로 국세의 소비과세 중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이러한 세가지 방안 중 첫째 방안은 이들 개별 소비세목이 특정한 세원에 한정되어 세원확충이라는 일반적 소비과세 도입의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둘째 방안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모든 재화와 용역에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중복과세금지 규정이 존치되는 한 현실적으로 새로운 세원발굴에 의한 신세목의 도입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세입의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마지막 방안인 국세의 소비과세 중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오연천(2000), 이영희(2001), 곽채기(2001), 이삼주(2001) 등은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를 통한 지방소비세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곽채기(2000), 오연천(2000), 김대영(2000) 등은 공유세원을 부가가치세의 전체 세수중의 일정비율로 하자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며, 송쌍중(2001), 이영희(2001), 오연천(2001), 김정훈(1996) 등은 부가가치세의 특정세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지방소비세의 과세 대상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같은 주장에서 진일보하여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을 공유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배분기준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김대영(2000)과 곽채기(2001)는 별도의 배분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고, 이삼주(2001)는 구체적으로 인구와 재정력 지수를 기준으로 배분한 바 있다¹⁾. 아울러 김정완(2004)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중앙과 지방간의 공동세원으로 활용하여 유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지방조정재원 형태로 재배분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를 통한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징세행정을 현행대로 국세청이 담당하고 세수를 배분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징세비용이나 납세협력비용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이재은, 2002: 70). 또한 중앙과 지방이 공동세원화하면 세원포착이 어려운 자영업 또는 서비스업의 허가나 개설신고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세원관리 노력이 배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표4〉 지방소비세에 관한 선행연구

구 분	도입(안)의 주요 내용
김대영(2004)	◦ 부가가치세를 공동세원으로 분여방식으로 도입
김정완(2004)	◦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중앙과 지방간의 공동세원으로 활용하여 역외유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지방 재정조정재원 형태로 재배분
임성일(2003)	◦ 자주재원 강화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관점에서 최적의 선택은 아닐지라도 현행 조세구조와 세수의 지역간 불균형도, 지역의 혜택 연관성 등을 고려할 때 일정부분 지방소비세 도입 타당
이재은(2002)	◦ 부가가치세의 세원을 공유하여, 현행 10%의 부가가치세 중 일정비율 설정
최명근(2001)	◦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 ◦ 지방특별소비세의 신설(도축세, 면허세, 입장세를 포함), ◦ 담배소비세의 개별소비세 존치
이영희(2001)	◦ 부가가치세의 일부(음식업, 숙박업, 부동산임대업)의 세원공유
원윤희(2001)	◦ 담배소비세의 증가세화, ◦ 마권세 국세이양과 입장세의 지방세화

1)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김정완(2004: 4-6)을 참조하기 바람.

구 분	도입(안)의 주요 내용
김대영(2000)	◦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을 지방소비세화
오연천(2000)	◦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 ◦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일부세원을 제한적으로 지방세원화, ◦ 교통세의 공동세원화 방안
곽채기(2000)	◦ 부가가치세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일반소비과세인 지방소비세 신설, ◦ 부가가치세를 징세지주의 원칙에 따라 공동세원화, ◦ 음식업·숙박업·특정장소 출입행위 등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일부 세원을 분리, 지방소비세 신설
지방재정발전 계획(1996)	◦ 현행 부가가치세를 이원화, 일부 업종(음식업,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운수창고업, 주택·건물의 신축 에 대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권 허용 ◦ 부가가치세를 이원화하지 않을 경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의 세원을 중복과세 방식을 통해, 공유 방안 강구
김정훈(1996)	◦ 교통세(휘발류소비세 및 경유소비세)에 대한 부가세로 지방소비세 신설, ◦ 음식업, 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화, ◦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등의 특별소비세를 지방소비세화
김대영(1996)	◦ 단기적 대안: 담배소비세와 도축세를 통·폐합, 지방소비세 신설, ◦ 장기적 대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중 유흥음식업, 숙박업, 운수창고업, 개인서비스업분 등을 지방소 비세로 이양

3. 외국의 사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관계(fiscal federalism)에서 있어 주요 이슈는 자치단체가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복잡한 문제는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각국이 나름대로 다양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거나 특정국가를 기준으로 볼 때에도 역사적으로 다른 제도를 채택하였다.

국가마다 제각기 다른 상황에 처해 있어 어느 국가에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자치단체의 재원조달 시스템을 제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상·하급 자치단체간의 세원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나 원리는 제시할 수 있다.

이 같은 세원배분은 상·하급 정부간의 지출예산의 배분과 관련지어 생각해야 하며 세원배분²⁾

2) 여기에서의 세원배분이란 의미는 중앙정부와 각 단계의 자치단체 중 어디에 세율 결정권을 부여할 것인가, 공동세 형태로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 다른 중앙정부 또는 다른 단계의 자치단체로부터 양여 또는 교부를 받을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자체만 별도로 고찰할 대상은 아니다. 왜냐하면 정부간 세출예산의 배분은 재원조달에 대한 고려 없이는 만족스러운 제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세원배분은 지방정부의 구성과 단계에 따라 나라별로 매우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에서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개발도상국에서보다 선진국에서 높다. 다만 영미계 국가에서는 재산세의 비중이 높고(호주, 캐나다, 미국, 아일랜드, 뉴질랜드, 1990년까지 영국), 일부 국가(특히 연방국가)에서는 소비세가 지방재정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주정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호주, 브라질, 캐나다, 독일, 인도, 남아프리카, 스페인, 미국). 이들 국가는 모두 과세권을 가진 주정부의 관할 구역이 넓다는 점이 특징이며 이 중 일부 국가는 소비세를 공동세의 형태로 운영하나 이와 관련하여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재량은 거의 없거나 전무하다. 둘째, 공동세 제도가 널리 활용되는 독일이나 포르투갈과 같은 나라의 경우 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정해 놓은 고정세율에 의하여 과세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정해놓은 제한세율에 의해 지방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주성의 폭이 넓어지면 지역간 경제적 격차가 커지고 중앙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세무행정의 단순화와 세무행정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중앙 또는 상급 자치단체가 공동세의 형태로 조세를 징수한 후 하급 단체에 배분하는 제도도 채택된다. 셋째, 일본의 경우 소비세법안이 1988년 말에 국회를 통과해 1989년 4월에 실시되었는데, 그 도입 배경은 소득·소비·자산 과세의 불균형 시정, 소비과세의 문제점, 소득과세의 불공평성 확대 등에 따른 것이다. 직접세·간접세간 비율의 조정은 국세의 경우 직간비율이 75 대 25, 지방세의 경우 85 대 15로 직접세에 편중되어 있어 이의 시정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의 수단으로 과세대상이 광범위한 대형간접세를 도입해 그 일부를 소득과세 경감의 보전재원으로 활용하고, 과세베이스로서 소득보다는 소득에서 저축을 공제한 소비가 적절하다는 입장에서 실시되었다. 소비세 도입에 따라 소비관련세목의 폐지·정리가 이루어졌다. 소비세 도입과 동시에 국세인 사탕소비세, 물품세, 입장세, 통행세가 폐지되고, 휘발유세 등의 자동차관련 세제는 도로특정재원으로 용도가 정해진 목적세이므로 존속하게 되었다. 또 자동차에 대해서는 3년간 6%의 세율로 부과하고, 주세와 담배세는 특수한 기호품에 대한 규제적 측면도 있어 소비세와 조정·병과하였다. 지방소비세가 수평적 불균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에는 충분한 통계를 입수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1998년의 1인당 지방소비세의 도도부현간 변이계수(0.25)는 법인사업세(0.39)보다는 낮고 담배세(0.11)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비양여세(0.19)보다는 높다. 지방소비세의 변이계수는 도도부현세 전체(0.25), 주민세 소득할(0.24)과 동등한 수치를 나타내, 세율이 보편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로 소득격차,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나 관광지의 존재를 생각할 수 있지만, 이의 상세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일본지방재무협회, 1999). 또한 1인당 지방소비세 수입과 1인당 소비양여

세 수입을 비교해 보면, 47개 시도부현 중에서 9개 단체만 증가했고 그 나머지 단체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동경권 4개 현은 모두 증가를 보여 주목되고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여러 나라의 사례로부터 우리나라에서 국가 및 지방간의 세원조정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세무행정의 중요성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세무행정 능력이 복잡한 세제의 운영을 감당할 수 없다면 세원배분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또 세제가 자원배분 또는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 복잡해질수록 과세권이 보다 상위계층의 정부에 주어져야 한다.

둘째, 외국의 경험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주요세원에서 발생하는 세입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자치단체의 책임성은 높아지고 경제적 효율성이 증대됨으로써 자치제도가 만족스럽게 운영된다고 한다.

셋째, 과세권의 지방이양시의 장점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과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점이고, 단점은 중앙정부의 효율적 재정정책, 특히 경제안정화 정책의 수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의 세원배분 문제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발전의 정도가 비슷한 나라들 간에도 세원배분 방식이 상이한 경우가 있다. 이것은 그 나라의 역사적·지역적·종족적 특성을 반영하여 세원배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Ⅲ. 지방소비세 도입의 효과 분석

1 부가가치세 및 지방세의 세원분포 지역적 편재

1) 부가가치세의 세원분포 분석

본 연구에서 세원이양의 대상으로 분석하는 부가가치세의 지역적 분포를 <표5>에서 살펴보면 2003년 세수실적기준으로 부가가치세의 세수는 15조 2,113억 90백만원으로 이 중 서울이 6조 835억 28백만원으로 전국의 40%에 이르며, 6개 광역시의 합계 5조 264억 45백만원을 포함할 경우 11조 347억 73백만원으로 무려 전국의 73.1%를 점유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2001-2002년 기간 중 43.2%, 39.7%를 차지하였고, 6개 광역시를 포함할 때 동기간 중 69.9%, 68.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세수의 7개시로의 편재가 심화되어 있고, 특히 서울로의 집중정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9개 도의 경우에는 2001-2003년 중 30.1%에서 27.4%로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그 중 충북, 전남, 경북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이고 있다.

〈표 5〉 부가가치세의 지역별 규모 변화추이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1	2002	2003
서울	5,083,322 (43.23)	6,270,270 (39.68)	6,008,328 (40.02)
부산	1,409,110 (11.98)	1,621,015 (10.25)	1,673,575 (11.00)
대구	854,929 (7.27)	1,033,482 (6.54)	1,092,749 (7.18)
인천	595,338 (5.06)	965,470 (6.11)	892,545 (5.86)
광주	168,144 (1.42)	295,063 (1.86)	684,061 (4.49)
대전	518,067 (4.40)	596,936 (3.77)	734,642 (4.82)
울산	-406,187 (-3.45)	116,161 (0.73)	-51,127 (-0.33)
경기	1,818,264 (15.46)	2,280,800 (14.43)	2,402,078 (15.79)
강원	414,247 (3.52)	581,447 (3.67)	646,831 (4.25)
충북	400,024 (3.40)	435,280 (2.75)	386,064 (2.53)
충남	-362,896 (-3.08)	3,102 (0.01)	-177,094 (-1.16)
전북	394,203 (3.35)	335,454 (2.12)	625,780 (4.11)
전남	220,654 (1.87)	404,196 (2.55)	-384,921 (-2.53)
경북	93,685 (0.79)	179,800 (1.13)	-133,773 (-0.87)
경남	392,129 (3.33)	495,184 (3.13)	517,052 (3.39)
제주	165,306 (1.40)	187,123 (1.18)	214,600 (1.41)
합계	11,758,339 (100%)	15,800,783 (100%)	15,211,390 (100%)

자료 : 국세청(각연도) 자료 재분석.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의 지역별 분포를 세수 규모 및 점유비율 측면에서 살펴볼 때 이들은 세원분포의 절대적 수준을 나타내고 있을 뿐, 상대적 분포나 세원의 지역적 편재에 대해서는 어떠한 적절한 시사점도 나타내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가중변이계수(weighted coefficient of variation) 및 Atkinson지수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세원의 지역별 분포의 상대적 수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6〉에서는 부가가치세 세원의 16개 시도별 분포³⁾의 상대적 격차⁴⁾를 측정하기 위하여 1인당

3) 조세수입의 균등배분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지수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Atkinson지수, 변이계수, Theil의 Entropy지수, Lorenz곡선 및 Gini계수, Kuznets지수, Khetan-Poddar지수, Pearson의 비대칭도지수, 십분위비율, 재정력집중지수 등이 있다.

4)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지수들 중 Atkinson지수, 가중변이계수 및 가중표준편차 등 세 가지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먼저 Atkinson지수의 경우ε값(본 분석에서는 0.5로 주어짐)을 변화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지수를 사용한 것과 같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 때문이다. 가중변이계수의 경우는 지역간 균등도를 측정하는 데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큰 값 또는 작은 값의 어느 특정 부분에 가중치를 두지 않은 채 균등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지수상의 특성 때문에 사용하게 되었다.

부가가치세 수입을 기준으로 당해지역의 인구비중을 가중치로 하여 측정한 가중변이계수⁵⁾와 Atkinson지수⁶⁾를 나타내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가중변이계수를 <표6>에서 살펴보면, 2001년에는 0.254이었으나 2002년에는 0.208로 감소하여 세원의 지역적 편재가 약간 완화되었으나 2003년에는 0.226으로 다시 증가하여 지역적 편중이 심화되었다. 이같은 분석 결과는 Atkinson지수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2001년에 0.080, 2002년에 0.105를 보이고 있어, 다소 지역간 세원의 불균등도의 증가를 보이다가 2003년도에는 0.153으로 더욱 불균형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이다.

〈표 6〉 1인당 부가가치세수의 지역별 편중도

(단위: 원, %)

구 분	2001	2002	2003
서울	495,289(17.4)	610,938(13.9)	585,416(13.8)
부산	373,716(13.1)	429,916(9.8)	443,856(10.4)
대구	338,583(11.9)	409,297(9.3)	432,769(10.2)
인천	232,137(8.2)	376,461(8.5)	348,025(9.0)
광주	121,512(4.3)	213,232(4.8)	494,348(11.6)
대전	369,213(13.0)	425,421(9.7)	523,561(12.3)
울산	-384,768(-13.5)	110,041(2.5)	-48,433(-1.1)
경기	190,504(6.7)	238,965(5.4)	251,672(5.9)
강원	266,842(9.4)	374,545(8.5)	416,663(9.8)
충북	267,303(9.4)	290,861(6.6)	257,975(6.1)
충남	-189,192(-6.7)	1,617(0.04)	-92,326(-2.2)
전북	196,467(6.9)	167,186(3.8)	311,884(7.3)
전남	105,108(3.7)	192,538(4.4)	-183,356(-4.3)
경북	33,643(1.2)	64,567(0.1)	-48,038(-1.1)
경남	126,228(4.3)	159,402(3.6)	166,442(3.9)
제주	302,266(10.6)	342,159(7.8)	392,401(9.2)
합 계	2,844,851(100%)	4,407,146(100%)	4,252,859(100%)

5) 가중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 $\{(1/n)\sum(t_i - \bar{t})^2(p_i/p)\}^{1/2}/\bar{t}$

t_i = i광역자치단체의 1인당 세수, \bar{t} = 전국의 1인당 세수, p_i = i광역자치단체의 인구,
 p = 전국 인구, n = 광역자치단체의 수

6) Atkinson지수 = $1 - \{(1/n)\sum(t_i/\bar{t})^{1-\epsilon}\}^{1/(1-\epsilon)}$. ϵ 는 0에서 ∞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균등분배 분석에서는 0.5에서 3사이의 값을 주로 사용하며 본 연구에서는 ϵ 를 0.5로 간주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세수의 지역별 분포가 완전히 균등하다면 Atkinson지수는 0의 값을 갖게 되고, 분포가 반대로 완전히 불균등하다면 1의 값을 지니게 된다. 지수에 관한 구체적 설명은 이준구(1993)를 참조하기 바란다.

구 분	2001	2002	2003
전국평균	244,856	329,035	315,097
가중표준편차	62,276	69,493	71,121
가중변이계수	0.254	0.208	0.226
Atkinson지수	0.080	0.105	0.153

2) 지방세의 세원분포 분석

지방세 세원의 지역별 분포 역시 부가가치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역별 규모 및 점유비율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표 7>에서 2003년도 지방세의 세수를 살펴보면 총규모가 28조 8,165억 24백만원이며, 이 중 서울이 8조 4,865억 17백만원으로 전국의 29.5%, 6개 광역시는 6조 6,422억 46백만원으로 전국의 23.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2001-2002년 기간 중의 점유비는 30.8%, 27.5%를 보이고 있으며, 광역시의 경우는 동기간 중 23.1%, 23.8%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9개 도의 경우 역시 2001-2003년 중 46.1%에서 47.5%로 거의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지방세의 경우는 부가가치세의 세원 분포에 비해 지역적 편차가 덜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방세의 지역별 분포를 세수 규모 및 점유비율로 살펴볼 때 이들 역시 부가가치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원분포의 절대적 수준을 나타내고 있을 뿐 상대적 분포나 세원의 지역적 편차에 대해서는 어떠한 적절한 시사점도 나타내 주지 못하고 있다. 즉 부가가치세의 경우와 같이 가중변이계수(weighted coefficient of variation) 및 Atkinson지수를 이용하여 지방세 세원의 지역별 분포의 상대적 수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7> 지방세수의 지역별 규모 및 비중 변화 추이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1	2002	2003
서울	7,701,343 (30.78)	7,760,127 (27.46)	8,486,517 (29.45)
부산	1,688,001 (6.75)	1,953,222 (6.91)	1,920,435 (6.66)
대구	1,091,292 (4.36)	1,261,586 (4.46)	1,242,358 (4.31)
인천	1,293,847 (5.17)	1,497,914 (5.30)	1,489,950 (5.17)
광주	541,191 (2.16)	611,613 (2.16)	634,184 (2.20)
대전	665,389 (2.66)	808,463 (2.86)	735,556 (2.55)

구 분	2001	2002	2003
을 산	521,102 (2.08)	601,890 (2.13)	619,763 (2.15)
경 기	5,653,765 (22.60)	7,226,349 (25.57)	7,343,674 (25.48)
강 원	602,163 (2.40)	676,303 (2.39)	658,451 (2.29)
충 북	551,326 (2.20)	600,712 (2.13)	593,438 (2.06)
충 남	735,136 (2.94)	782,588 (2.77)	780,520 (2.71)
전 북	634,780 (2.54)	655,013 (2.32)	665,533 (2.31)
전 남	655,800 (2.62)	710,786 (2.52)	679,400 (2.36)
경 북	1,092,281 (4.37)	1,150,419 (4.07)	1,076,726 (3.74)
경 남	1,286,175 (5.14)	1,599,432 (5.66)	1,502,470 (5.21)
제 주	304,503 (1.22)	364,488 (1.29)	387,549 (1.34)
합 계	25,018,094 (100.%)	28,260,905 (100%)	28,816,524 (100%)

주 : 2001년, 2002년은 결산기준, 2003년은 당초예산 기준임.

자료 : 행정자치부(각연도) 자료 재분석.

〈표 8〉에서는 지방세 세원의 16개 시도별 분포의 상대적 격차를 측정하기 위하여 1인당 지방세수입을 기준으로 당해지역의 인구비중을 가중치로 하여 측정한 가중변이계수와 Atkinson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1인당 지방세수의 가중변이계수는 2001년에는 0.105이었던으나 2002년에는 0.092로 감소하여 세원의 지역적 편차가 약간 완화되었지만 2003년에는 0.108로 다시 증가하여 지역적 편중이 심화되었다. Atkinson지수에서 있어서도 2001년 0.019, 2002년 0.018로 비슷한 정도를 보이다가 2003년에는 0.023으로 다시 지역별 편중도가 심화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가중변이계수 및 Atkinson지수 분석 결과, 지방세수의 지역적 분포는 부가가치세의 경우(〈표 5〉과 〈표 6〉)보다는 훨씬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1인당 지방세수의 지역별 편중도

(단위: 원, %)

구 분	2001	2002	2003
서 울	750,374 (10.4)	756,101 (9.2)	826,876 (10.0)
부 산	447,682 (6.2)	518,022 (6.3)	509,326 (6.2)
대 구	432,192 (6.0)	499,634 (6.1)	492,019 (6.0)

구 분	2001	2002	2003
인 천	504,503 (7.1)	584,074 (7.1)	580,968 (7.1)
광 주	391,100 (5.4)	441,992 (5.4)	458,303 (5.6)
대 전	474,206 (6.6)	576,171 (7.0)	524,212 (6.4)
울 산	493,646 (6.8)	570,178 (6.9)	587,109 (7.2)
경 기	592,359 (8.2)	757,122 (9.2)	769,415 (9.4)
강 원	387,890 (5.4)	435,648 (5.3)	424,148 (5.2)
충 북	368,405 (5.1)	401,406 (4.9)	396,545 (4.8)
충 남	383,255 (5.3)	407,994 (5.0)	406,916 (5.0)
전 북	316,369 (4.4)	326,453 (4.0)	331,696 (4.0)
전 남	312,389 (4.3)	338,581 (4.1)	323,630 (4.1)
경 북	392,242 (5.4)	413,120 (5.0)	386,656 (4.6)
경 남	414,027 (5.7)	514,866 (6.3)	483,653 (5.8)
제 주	556,791 (7.7)	666,475 (8.2)	708,643 (8.6)
합 계	7,217,430 (100%)	8,207,837 (100%)	8,210,115 (100%)
전국평균	520,977	588,505	600,075
가중표준편차	54,848	54,345	64,834
가중변이계수	0.105	0.092	0.108
Atkinson지수	0.019	0.018	0.023

3) 세원분포의 지역편차 및 문제점

이상에서 가중변이계수 및 Atkinson지수 분석을 통하여 1인당 부가가치세 및 지방세의 세원분포를 16개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살펴보았는데, 대체적으로 지역적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부가가치세의 경우 지방세 분포보다 지역적 편차가 더욱 크며,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국세 세원의 분포보다 지역별 편중도가 최소한 비슷하거나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의 수직적 형평화를 위한 국세 및 지방세간의 세원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특히 부가가치세의 일부(예를 들어 3%)를 중심으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경우, 지방재정의 수평적 불균형은 심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2. 지방소비세 도입의 시뮬레이션 분석

부가가치세 10% 중 3%를 근간으로 하여 지방소비세를 도입하였을 경우 수직적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지는 기여를 하겠지만,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세원의 지역적 편차가 심하여 <표 9>와 <표 10>에서 보듯이 광역자치단체간의 수평적 불균형은 크게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9> 지방소비세 도입 후 1인당 지방세수의 지역별 편중도

(단위: 원, %)

구 분	2001	2002	2003
서울	898,960 (11.1)	939,383 (9.9)	1,002,500 (10.6)
부산	559,797 (9.4)	646,997 (6.8)	642,480 (6.8)
대구	533,767 (6.6)	622,423 (6.5)	621,850 (6.6)
인천	574,144 (7.1)	697,012 (7.3)	685,380 (7.2)
광주	427,554 (5.3)	505,962 (5.3)	606,610 (6.4)
대전	584,970 (7.2)	703,798 (7.4)	681,280 (7.2)
울산	378,211 (4.7)	603,190 (6.3)	572,580 (6.0)
경기	649,510 (8.4)	828,812 (8.7)	844,920 (8.9)
강원	467,942 (5.6)	548,012 (5.8)	549,150 (5.8)
충북	448,596 (5.5)	488,664 (5.1)	473,940 (5.0)
충남	326,498 (4.0)	408,479 (4.3)	379,220 (4.0)
전북	375,309 (4.7)	376,609 (4.0)	425,260 (4.5)
전남	343,921 (4.3)	396,342 (4.2)	268,620 (2.8)
경북	402,335 (5.0)	432,496 (4.5)	372,240 (3.9)
경남	451,895 (5.6)	562,687 (5.9)	533,590 (5.6)
제주	647,471 (8.0)	769,123 (8.1)	826,360 (8.7)
합계	8,070,880 (100.0%)	9,529,989 (100.0%)	9,485,980 (100%)
전국평균	594,433	687,216	694,605
가중표준편차	70,608	67,423	80,187
가중변이계수	0.119	0.098	0.115
Atkinson지수	0.024	0.020	0.029

<표 9>에서는 지방소비세 도입 후 1인당 지방세 세원의 16개 시도별 분포의 상대적 격차를 측정하기 위하여 1인당 지방세 수입을 기준으로 당해지역의 인구비중을 가중치로 하여 측정된 가중변이계수와 Atkinson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지방세의 가중변이계수를 <표 9>에서 살펴보면, 2001년에는 0.119이지만 2002년에는 0.098로 감소하여 세원의 지역적 편차가 약간 완화되

였으나 2003년에는 0.115로 다시 증가하여 지역적 편중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Atkinson지수에서 있어서도 비슷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2001-2002년 기간 중 0.024에서 0.020으로 지역간 세원의 불균등도가 약간 완화되었으나 2003년에는 0.029로 다시 불균등도가 악화되었다.

〈표 10〉 지방소비세 도입의 수평적 형평화 효과

구 분		2001	2002	2003
지방소비세 도입 전	가중표준편차	54,848	54,345	64,834
	가중변이계수	0.105	0.092	0.108
	Atkinson지수	0.019	0.018	0.023
지방소비세 도입 후	가중표준편차	70,608	67,423	80,187
	가중변이계수	0.119	0.098	0.115
	Atkinson지수	0.024	0.020	0.029

〈표 10〉에서는 지방소비세 도입 전과 도입 후의 지방세 세원의 지역적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방소비세 도입 후의 가중변이계수는 2001-2003년 기간 중 0.119, 0.098, 0.115로서 도입 전의 가중변이계수 0.105, 0.092, 0.108보다 높아 세원의 지역별 편중을 다소 심화시키고 있다. Atkinson지수 역시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었을 경우 동기간 중 0.024, 0.020, 0.029로서 도입 전의 Atkinson지수 0.019, 0.018, 0.023보다 높아 부가가치세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지방세 세원의 지역적 편중을 더욱 악화시켜 광역자치단체간의 수평적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IV. 결론 및 정책함의

앞의 분석에서 보았듯이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일부(3%)를 근간으로 하여 일괄 도입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수직적 불균형을 해소하는데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지역별 편중이 매우 심하여 광역자치단체간의 수평적 불균형은 크게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방안은 부가가치세를 공동세원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 방식으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경우 구체적인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일본형 지방소비세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지방소

비세의 과세표준으로 수용하여 일정한 세율로 부과하는 방법인데, 청산제도 등 세무행정상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다른 하나는 부가가치세를 공동세로 설정하고 일정비율을 광역지방정부 단위로 징세지주의 원칙에 따라 배분하는 방안이다. 어느 방안이든 세수는 광역자치단체에 귀속하되 이를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공동으로 활용하고, 기초단체에 대한 세수배분권을 광역단체에 부여하여 지방간의 재정조정도 가능하게 하면 지역간 세수불균등 문제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김대영(2004: 55-78)의 연구가 두드러지는데, 그에 의하면, 지방소비세를 시도세로 도입하되, 현행 광역·기초간 재정조정제도의 근간⁷⁾인 재정보전금제도와 조정교부금제도를 준용하여 지방소비세수를 광역·기초간 자원배분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면,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자치단체 계층간의 자원편중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 11>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자치단체간 재원의 변화를 계정과목 중심으로 파악효과를 살펴본 것이다.

<표 11> 지방소비세 도입의 지방세입 파급효과

구 분	지방세	재 정보전금	조 정 교부금	보통교부세		특 별 교부세	
				기준재정수요	기준재정수입		
시	분청	(+)	0	0	(+)	(+)	(-)
	자치구	0	0	(+)	0	0	(-)
	군	0	(+)	0	0	(+)	(-)
도	분청	(+)	0	0	(+)	(+)	(-)
	시	0	(+)	0	0	(+)	(-)
	군	0	(+)	0	0	(+)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방소비세는 시도세로 도입하고, 기능이양 정도(중앙에서 광역자치단체, 중앙으로부터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기초자치단체로의 기능이양을 모두 포함)에 따라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등의 재정조정제도를 활용하여 광역과 기초간의 재정조정을 통해 재원을 배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7) 중앙과 지방간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형태로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의 이전재원이 있는 것과 유사하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도 광역단체로부터 기초단체로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시도비 보조금의 형태로 재원이전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재정조정제도가 존재함으로써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단순히 국세(부가가치세원)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지방세수의 증가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방세수는 물론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의 지방세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 곽채기(2004), “지방자치단체간 세원공유방안”, 「지방세」 통권 제86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곽채기(2005),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방안”, 「2005. 7. 지방재정세미나」, 한국지방재정학회.
- 권강웅(2004), 「축조 지방세법 해설」, 2004 개정증보판. (주)광고TNS.
- 김대영(2000), “지방소비세제 도입의 실천방안”, 「지방세」 통권 제61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김대영·조기현(1999), 「지방세체계 조정의 재정효과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대영(2003), 「지방소비세 도입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대영(2004), “지방소비세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제9권 제1호, 한국지방재정학회.
- 김성태(1995), 「1995년 지방세제개편 방향」, 대한상공회의소.
- 김정완(2004), “지역생산의 역외유출입에 따른 세원 조정방안: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 「지방재정논집」 제9권 제2호, 한국지방재정학회.
- 김정훈(1996),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현아(2003),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제 도입여부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남창우·구정모(2005),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 「도시행정학보」 제18집 제3호, 한국도시행정학회.
- 박정수(1993), 「공동세제도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안종석·박정수(1996),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자원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오연천(2000), “지방소비세제 도입의 당위성과 기본방향”, 「지방세」 통권 제61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원윤희(1996),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제10권 제4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삼주(2003), “지방소비세 도입의 정책과제”, 「지방세」 통권 75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이영희(1993),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조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재은(2002),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성과와 발전과제”, 「2002 지방재정세미나」, 한국지방재정학회.
- 이준구(1993),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다산출판사.
- 이필우(1999), “지방소비세 도입의 기본방향”, 「지방세」 제4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임성일(2003), “우리나라 재정분권 상태에 대한 분석과 중앙·지방간 자원배분체계의 재구축”, 「지방재정논집」 제8권 제2호, 한국지방재정학회.
- 정병순(2003),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소비세 도입과 지방교부세”, 「지방재정」 통권 제124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조기현(1996), “시계열이론을 이용한 이전재정의 형평화 효과 분석”, 「지방행정연구」 제11권 제3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최명근(1999), “일본의 지방소비세 도입사례연구”, 「지방세」 제4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한국조세연구원(1996), 「주요국의 조세제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7), 「일본의 지방세제」, 연구자료집 97-16.
- 행정자치부(1999), 「외국의 지방소비세제」.
- 貝塚啓明 外 編集(1991), 「地方の時代の財政」, 有斐閣.
- 小西砂千夫(1997), 「日本の税制改革」, 有斐閣.

- 杉本和行(1999), 「日本の財政」, 東洋経済新聞社.
- 谷山治雄(1998), 「ものがたり税制改革」, 新日本出版社.
- 持田信樹. (2004). 「地方分権の財政學」.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池上岳彦. (2004). 「分権化と地方財政」. 東京: 岩波書店.
- 日本地方財務協會(1999). 「地方財政統計年報」.
- 土居丈郎. (2004). 「地方分権改革の經濟學」. 東京: 日本評論社.
- 和田八束編(1993), 「地方分権化と地方税財政」, 日本評論社.
- Bahl, Roy(1999). Implementation Rules for Fiscal Decentralization, Paper present at the International Seminar on Land Policy and Economic Development, Taiwan.
- Bird, Richard.(1993), Threading the Fiscal Labyrinth: Some Issues in Fiscal Decentralization, National Tax Journal. 46(2): 207-227.
- Bird, Richard.(1999). Rethinking Subnational Taxes: A New Look at Tax Assignment. IMF Working Paper. WP/99/165.
- Bradbury, Katharine L.(1984), "State Aid to Offset Fiscal Disparities across Communities," National Tax Journal, 37: 151-170.
- Bradford, David F.(1996), Fundamental Issues in Consumption Taxation, Washington, D.C.: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 Ebel, Robert D., and Yilmaz, Serdar.(2002), On the Measurement and Impa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Washington, D. C.: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2809: 1-47
- Kenyon, Daphne A. (1997), Tax Policy in an Intergovernmental Setting: Is it Time for the U.S. to Change. Ronald C. Fisher, ed.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61-88.
- McLure, Charles, ed.(1983), Tax Assignment in Federal Countrie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Press.
- McConnell, Allan(1999), The Politics and Policy of Local Taxation in Britain, Tudor.
- Messere, K.C.(1993), Tax Policy in OECD Countries: Choices and Conflict, Amsterdam: IBRD Publications.
- Oates, Wallace E. (1999), Decentralization of the Public Sector. In Robert J. Bennett(ed), Decentralization Local Governments, and Markets. Oxford: Clarendon Press: 43-58.
- Shah, A.(2004). Fiscal Decentralization in Developing and Transition Economies. Washington, D. C.: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3282: 1-47.